

국내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경영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

김주환* · 송태한** · 원월석** · 김화영****

*, **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, ***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조교수

Study 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afety Management Evaluation Standards for Domestic Ship Safety Management Companies

Joo Hwan Kim* · Tea Han Song** · Wol Seok Won** · Hwa Young Kim****

*, ** Maritime Safety Research Center,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

**** Divis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Science, Mokpo Maritime University

핵심용어 : 안전관리대행업체, 안전경영 지표, 평가수준, 안전관리

Key Words : Safety Management Company, Safety Evaluation Standards, Evaluation Level, Safety Management

1. 연구 배경 및 목적

연구의 배경

-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라 **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·시행 필요**
- 대상선종: 해상여객운송사업 종사 선박, 500톤 이상 화물운송사업 종사 선박(100~500톤 사이 위험물운반선, 특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길이 100미터 또는 2천톤 이상 부선 등 일부 예외선 포함), 국적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여객물 운반선과 이등시 해상구조물
- 국내 선박소유자 다수가 해사안전법 제51조에 의거 정부에 등록된 안전관리대행업체에게 안전관리체제 수립·시행 업무를 위탁 중이므로 **안전관리대행업체는 실질적인 선박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주체인**
- 따라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행업체 대상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경영 의식 제고가 중요함
- ⇒ 현행 업체의 해양사고 발생율과 더불어 **최소한적인 성격이 강한 업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안전경영 지표 평가항목 개발 필요**

연구의 목적

- 「해사안전법」 시행규칙 제51조의2 [별표 13의2] 「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평가지수」 기준을 토대로 **안전경영 지표 세부 평가항목 구성 및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설계**
- 설계한 안전경영 지표를 실제 적용하여 **국내 안전관리대행업체 안전경영 수준 평가 도출**

2.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경영 지표 개발

연구 흐름

```

        graph TD
            A[안전관리대행업체(10개사), 지방해양수산청 민중 심사관(2명) 델파이 조사(1차)] -- Brainstorming --> B[사업자의 고안전성, 안전관리전문인력에 대한 투자 정도,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 정도, 안전관리 활동의 결과]
            B --> C[안전경영 지표별 세부평가항목 선정]
            C --> D[안전경영 지표 평가항목 중요도 선정 델파이 조사(2차)]
            D -- "(총점 40점: 평가항목별 점수 분배)" --> E[안전관리대행업체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세부기준 마련]
            F["「해사안전법」 시행규칙 제51조의2 [별표 13의2]"] --- B
            F --- C
            F --- D
            F --- E
    
```

3.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경영 지표 도출

안전경영 지표 평가항목

| 지표 | 매점 | 적용 | 평가항목 | 세부매점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사업자의 고안전성 | 4 | 공통 |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연속성 | 2 |
| | | | 안전관리자의 근무 정도 | 2 |
| 안전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 정도 | 5 | 내항/외항 | 내항선 법정 안전관리책임자 인력 추가 지원 정도 | 2 |
| | | 공통 | 외항선 법정 안전관리책임자 인력 추가 지원 정도 | 2 |
|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 정도 | 20 | 공통 | 안전관리(책임자)에 대한 1:1(배)반정 교육 지원 정도 | 2 |
| | | | 안전관리(책임자)의 직무능력 관리 정도 | 1 |
| | | |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·감독 및 기타 특별안전점검 결과 | 6 |
| | | 내항/외항 |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결과(사법정) | 6 |
| | | |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결과(선박) | 6 |
| | | | 항만구조체 수검 결과 | 8 |
| 내항/외항 | 공통 |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결과(사법정) | 5 | |
| | |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결과(선박) | 5 | |
| | | 운영선박의 안전관리업무수준 | 2 | |
| 안전관리 활동의 결과 | 11 | 공통 | 해사안전관계 법령 준수 여부 | 2 |
| | | | 해양안전 기에도 | 3 |
| | | | 자발적 안전활동 전개 | 6 |

4. 결론

연구결과 시사점

- 최근3년간 국내 외항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경영수준은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반면 내항 안전관리대행업체는 특정 업체를 제외하고 하향 평준화되어 있음
- 최근3년간 국내 외항안전관리대행업체에 비해 내항안전관리대행업체의 경우 추가 안전관리(책임)자 인력 충원, 외부교육 실시 등 안전전문인력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
- 최근3년간 내항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선박 안전수준 지표, 자발적 안전활동 평가에서 점수 관차가 큼 ⇒ **가시적인 해양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내항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실질적 안전관리 수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필요하고, 내항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관리 동기부여 정책 강구 필요**

연구의 한계점

- 업체별 정량적인 안전경영수준을 계량 평가로 수용하는데 있어 한정된 평가요소를 식별하다 보니 다양한 업체의 경영 환경에서 발생합수 있는 외생 변수를 모두 고려하지 못함
- 델파이 분석을 통해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도출하여 실제 평가에 활용된 지표가 해양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지 알 수 없음

* First Author : kjh710@kst.or.kr, 044-330-2314
 † Corresponding Author : hwyoung@mmu.ac.kr, 061-240-7195